

소득의 유형 및 세부적 구성이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 및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최창기* · 전병욱**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소득유형 및 세부적 구성과 함께 다양한 설명변수들이 납세자별 특성인 위험회피성향과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첫째, 납세자의 소득유형과 관련해서는 가구원의 총소득 중 사업소득의 비중이 높을수록 위험회피성향이 낮아지지만, 부동산임대소득의 비중이 높을수록 동(同)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순응도에 대해서는 위험회피성향, 근로소득, 자본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비중이 커질수록 납세순응도를 증가시켜서 위험회피성향의 증가에 따라 납세순응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납세자의 소득구성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근로소득과 비교한 사업소득의 상대적 비율이 커질수록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이 낮아지지만, 근로소득 대비 부동산임대소득 및 자본소득의 상대적 비율이 커질수록 동(同)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소득유형 및 구성은 전체적으로 납세자의 중요한 경제적 특성인 위험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회피성향은 다시 조세회피와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정책 및 세무행정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득유형 및 구성의 특징에 따라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의 적정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가구원 단위의 소득유형 및 구성의 특징이 납세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명확한 변수 측정 등을 통한 발전된 연구설계와 함께 국책연구기관이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대규모 자료를 바탕으로 한 면밀한 실증분석을 통해 선행연구와 구분되는 차별적 공헌점이 있다.

〈주제어〉 소득유형, 소득구성, 위험회피성향, 납세순응, 조세회피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ckchoe70@gmail.com, 주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bwjun@uos.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22년 5월 17일 1차수정일 2022년 6월 25일 2차수정일 2022년 8월 16일

게재확정일 2022년 8월 17일

I. 서 론

소득의 유형과 세부적 구성의 납세자별 특성은 사후적으로 최종적인 조세부담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태도인 위험회피성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경제학의 보편적 논의와 더불어 일반적인 효용함수의 특성으로 인해 개인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위험회피성향이 낮아진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Allingham and Sandmo 1972), 소득의 상대적 수준과 함께 다른 측면의 특성인 소득의 유형 및 다양한 소득 유형의 세부적 구성도 납세자의 중요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납세자의 소득유형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자본소득 및 기타소득 등으로 다양하고, 개인의 소득을 구성하는 세부적 항목도 서로 상이하다. 즉, 총소득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절대적 수준으로 측정되는 납세자의 소득유형과 개별 소득의 상대적 비율로 측정되는 소득구성의 특징에 따라 위험회피성향에 차이가 있으면 소득유형 및 구성의 특징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에 대한 과세관청의 차별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한편 위험회피성향은 납세자의 조세회피와 납세준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Beck et al. 1991), 이들은 납세준응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세행정의 효과성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조세정책적 측면의 엄밀한 연구의 필요성도 있다. 즉, 납세자의 소득유형 및 구성의 특징에 따른 위험회피성향의 차이는 납세준응도의 차이를 통해 납세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유형 및 구성의 특징에 따라 납세자의 주관적 특성인 위험회피성향과 함께 이를 매개로 조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반영하는 조세회피 및 납세준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서 조세정책 및 세무행정에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위험회피성향이 납세준응과 함께 조세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통해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일부 확인할 수 있지만(Fischer et al. 2012 ; 강민조와 전병욱 2018 ; 신유정과 전병욱 2019), 위험회피성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납세자의 소득유형 및 구성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일부 선행연구들은 실험연구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비교적 소규모 표본에 대한 위험회피성향을 측정하였으나(Young 1985 ; Murnighan et al. 1988 ; Holt and Laury 2002 ; 민경실과 송인성 2014 ; 배수진 2017 ; 이정미와 심태섭 2017), 자료수집의 제약 및 대규모 표본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분석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는 편이다.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가구원별 소득유형 및 구성과 함께 다양한 설명변수들이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위험회피성향과 조세회피 및 납세준응도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예상(위험회피성향의 증가에 따른 조세회피

의 감소 및 납세순응도의 증가)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앞선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납세자의 소득유형 및 성격과 함께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대규모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보다 면밀한 실증적 연구설계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재정패널조사 자료는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 측정에 있어서 선행연구들의 다양한 측정방법과는 다르게 비교적 단순한 설문을 통한 직관적 측정방식을 사용하므로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로¹⁾ 인한 분석결과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장점도 있다(신유정과 전병욱 2019).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이처럼 선행연구에 비해 개선된 연구설계 및 실증분석을 통해 가구원 단위의 소득유형 및 구성의 특징이 납세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현실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본 연구는 명확한 변수 측정 등을 통한 발전된 연구설계와 함께 국책연구기관이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대규모 자료를 바탕으로 한 면밀한 실증분석의 측면을 통해 선행연구와 구분되는 차별적 공헌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은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제Ⅲ장은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분석대상 표본을 제시하였다. 제Ⅳ장은 실증분석의 결과를 해석했고, 제Ⅴ장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Ⅱ. 선행연구의 검토

1. 위험회피성향 관련 선행연구

개인의 위험회피성향이 다양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및 소득수준을 제외한 다른 외생적 요인들이 위험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험회피성향의 측정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실험연구나 설문조사 등을 이용했는데, 먼저 Young(1985)은 위험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해 복권의 당첨확률을 측정변수로 채택하였다. 예컨대, 복권에 당첨될 경우에만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 복권의 가격이 5,000원으로 정해진 경우에 이 복권을 구입하려는 의사를 복권의 당첨 확률로 측정한 응답결과로부터 위험회피성향을 측정하였다. Murnighan et al.(1988)은 특정 수익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확실한 투자안과 특정 수익보다 높거나 낮은 두 가지 수익에 대해 실현될 확률이 주어진 불확실한 투자안을 개별적으

1) 프레이밍 효과는 제시된 문항에 따라 사람들의 선택 또는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인데, 특정한 사안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이론이다. Kahneman and Tversky(1979)의 실험연구에서는 기대효용이론이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개인의 의사결정 및 선택행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새로운 이론(prospect theory)을 제시하였다.

로 비교한 후 하나의 투자안을 선택하게 하여, 확실한 투자안을 선택한 개수를 기준으로 위험회피자와 위험선호자로 구분하였다. Holt and Laury(2002)는 다중가격 제시 디자인(multiple price list design)에 따라 사람들이 복권을 구입할 때의 당첨금액과 위험회피성향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10가지의 경우별로 기대당첨금액을 다르게 측정해서 기대당첨금액의 변화가 위험회피성향에 미치는 정도에 큰 차이 없음을 보였다.

민경실과 송인성(2014)은 위험회피성향의 측정과 관련하여 Holt and Laury(2002)의 측정방식을 이용한 기대효용이론에 근거한 확률척도 방식을 사용하여 국내 투자자들의 위험회피성향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전반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위험회피성향이 미국보다 낮게 나타났고, 남성 및 연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상대적으로 위험회피성향이 낮게 나타났다. 배수진(2017)은 성실납세자의 혜택이 조세순응을 유도하는지에 대한 실험연구에서 Murnighan et al.(1988)과 동일한 방식으로 위험회피성향을 측정하였다. 이정미와 심태섭(2017)은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경제적 실질의 요건 도입이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연구에서 Young(1985)과 동일한 방식으로 위험회피성향을 측정하였다. 김대환(2019)은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실증연구에서 위험회피성향이 높을수록 보장성 보험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김대환과 김태환(2020)은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실증연구에서 위험회피성향이 커질수록 부동산의 보유 규모 및 상대적 비중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프로스펙트 이론 및 프레이밍 효과와 관련한 선행연구로 먼저, Vine and Wartick(2003)은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세금공제 및 정부보조금이 이들을 각각 손실구조 및 이익구조로 보는 프로스펙트 이론에 의해 납세자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실험연구를 통해 분석했는데, 프레이밍 효과에 의해 정부보조금을 받지 못한 납세자의 소득신고율이 세금공제를 받지 못한 납세자에 비하여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Falsseta and White(2005)는 보유주식의 처분손익에 따른 처분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프로스펙트 이론과 다르게 평가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처분하는 사례가 더욱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섭과 조인선(2004)은 실험연구를 통해 과세관청의 기각확률이 낮을 경우 납세자가 위험을 추구해서 프로스펙트 이론과 상반되는 위험선호의 행태를 확인하였다. 차경욱과 정다운(2013)은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 투자자의 위험선호도에 따른 금융자산 보유 특성을 프로스펙트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손실회피성향에 차이가 있고,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위험회피성향이 낮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박주영과 심태섭(2016)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실험연구에서 프로스펙트 이론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이 납세자의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과도한 원천징수로 납세자의 선택 상황을 환급 상황으로 전환하더라도 조세순응이 향상되지는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2. 납세자의 소득유형 및 구성 관련 선행연구

가구 및 가구원 단위의 소득유형 및 구성이 납세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외생적 요인들이 소득유형 및 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아래와 같다.

서영빈과 송헌재(2015)는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해서 중고령 가구의 소득원천별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소득원천별 한계소비성향은 유의적 차이가 있고,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및 근로소득의 순으로 한계소비성향이 크게 나타났고, 가구 소비를 품목별로 분류하더라도 한계소비성향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강민조와 전병욱(2018)은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납세자들의 조세제도의 공평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소득원천 및 지출행태 등의 경제적 특성들이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득유형 및 구성과 관련해서 가구주의 총소득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비중이 높을수록 납세자들은 수평적 공평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납세자의 주관적 인식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3. 개인의 조세회피 및 납세순응도 관련 선행연구

개인적 측면의 조세회피 및 납세순응이 납세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과 함께 다른 외생적 요인들이 이들 항목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아래와 같다²⁾.

Allingham and Sandmo(1972)는 실제소득보다 낮게 신고하는 개인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있어 실제 조세회피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로 회피하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불확실성 하의 의사결정의 문제로 보았다. Von Neumann and Morgenstern(1944)의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개인의 선택은 효용함수에 의한다는 명제를 확장하여 개인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있어 효용함수를 실제소득,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 신고소득, 세율 및 가산세율의 기대효용함수로 분석하였다. 특히 위험회피성향을 고려하는 경우 실제소득과 신고소득의 관계를 Arrow(1965)와 Pratt(1964)의 절대 위험회피도와 상대 위험회피도를 개념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실제소득이 다양한 상황에서 상대 위험회피성향이 소득함수와 신고소득들 간에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Beck et al.(1991)은 소득의 불확실성, 세율, 가산세율 및 세무조사확률 등이 개인 납세자가 소득신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연구에서 개인 납세자의 의사결정이 위험선호성향에 민감하다는 선행된 이론적 연구를 확장하였다. 연구결과 위험중립 납세자의 경우 가산세율과 세무조사확률이 높아질수록 납세순응이 높아짐을 보고하였으며 위험회피성향이 높은 납세자의 경우 세율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Roberts(1998)는 세무회계담당자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위험선호와 관련하여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서 세무회계담당자의 위험선호와 함께 위험 및 보상에 대한 환경적 요인으로서 납세자의 위험선호에

2) 세무회계 분야의 대다수의 실증분석 연구를 차지하는 법인의 조세회피 관련 선행연구는 포함하지 않았다.

대한 태도가 세무회계담당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보았다. Fischer et al.(2012)은 납세자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을 조세에 대한 인식·태도(조세 공정성에 대한 인식), 인구통계적 변수(연령, 성별 및 교육수준 등), 조세불응 기회(소득수준, 소득원천 및 직업 등) 및 조세시스템(조세법의 복잡성, 세율, 세무조사 위험 및 처벌 규모 등)의 4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박주철과 이남우(2003)는 소득원천에 따라 세율변화에 대한 납세순응의 정도에 대한 차이에 관한 실험연구에서 세율이 높은 집단과 세율이 낮은 집단을 비교할 경우 평균신고소득액에 있어 증여소득 상황의 경우에는 차이가 유의적이지 않은 반면 직무소득 상황의 경우에는 유의적으로 나타나 소득생성에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직무소득의 경우 개인들은 납세순응 수준을 높인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세율 인상에 따른 신고소득수준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소득 유형과 세율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적으로 나타나 소득유형이 직무소득에 해당될 경우 신고소득수준이 유의적으로 높아짐을 확인했다. 신유정과 전병욱(2019)은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위험회피성향이 납세자의 주관적 인식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납세순응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 위험회피성향이 높을수록 세무조사 기피 정도로 측정된 납세자의 주관적 인식 정도를 높여서 결과적으로 납세순응이 증가하고,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에 대한 인식도 세무조사 기피 정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단, 개인사업자에 대한 낮은 세무조사 확률 등으로 예상과 다르게 현금매출 신고 정도로 측정한 납세자의 의사결정 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로부터 세무조사 등의 사후적 검증이 강화될 경우 동(同)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4.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통해 위험회피성향의 측정에서 다양한 연구방법론이 이용되었지만 프레이밍 효과로 인한 오류 가능성 및 불충분한 표본의 문제점도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적 측면의 조세회피 및 납세순응이 납세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외생적 요인들이 이들 항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내재적 동기 및 외부적 동기의 영향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인 반면 가구원 단위의 소득유형 및 구성이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외생적 요인들이 소득유형 및 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단순한 측정방식의 대규모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연구방법론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위험회피성향을 측정하고, 보다 현실적인 연구가설을 통해 가구원 단위의 소득유형 및 구성이 납세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서 차별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연구설계

1. 가설설정

효용함수의 특성으로 인해 개인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위험회피성향이 감소하지만(Allingham and Sandmo 1972) 소득수준과 별개로 납세자별 소득유형(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자본소득 및 기타소득 등) 및 구성은 사후적으로 최종적인 조세부담의 수준과 함께 납세자의 중요한 경제적 특성인 위험회피성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비중이 높을수록 납세자들은 수평적 공정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강민조와 전병욱 2018) 바와 같이 개별 소득의 절대적 수준 및 전체 소득에 대한 상대적 비중으로 측정되는 소득 유형 및 구성을 통해 위험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위험회피성향에 대한 소득유형 및 구성에 따른 차별적 영향은 소득의 종류별로 차등적인 세금부담의 수준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의 범위 등과 관련한 상이한 납세협력비용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소득유형 및 구성과 위험회피성향의 인과관계에 대한 대립가설 형태의 연구가설은 아래와 같다³⁾.

<가설 1> 납세자의 소득유형 및 구성은 위험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친다.

위험회피성향이 큰 납세자는 세율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한 선행연구(Beck et al. 1991)와 같이 위험회피성향은 중요한 경제적 의사결정인 조세회피 및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 항목은 다시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의 수준을 결정해서 전체적인 조세행정의 효과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위험회피성향이 높을수록 납세자의 주관적 인식의 정도를 높여서 결과적으로 납세순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신유정과 전병욱 2019), <가설 1>과 같이 납세자의 소득유형 및 구성이 위험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면 최종적으로 납세순응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소득유형 및 구성이 위험회피성향의 잠재적 매개를 통한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립가설 형태의 연구가설은 아래와 같다⁴⁾.

3) <가설 1> 및 <가설 2>는 양측검정(two-tailed test) 방식의 대립가설이기 때문에 종속변수에 미치는 설명변수들의 영향의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다.

4) 개인의 주관적 특성인 위험회피성향이 중요한 의사결정인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수의 선행연구(Beck et al.(1991) 및 신유정과 전병욱(2019) 등)에서 이미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의 개별적 특성이 이들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병렬적으로 검정함으로써 양자 간의 인과관계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연구설계를 채택하였다. 즉, 납세자의 개별적 특성(A) $\Rightarrow$ 위험회피성향(B) $\Rightarrow$ 납세순응도(C)의 연속적 인과관계에 관해 본 연구에서 $A \Rightarrow B$ 및 $A \Rightarrow C$ 의 관계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B \Rightarrow C$ 의 관계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연구설계를 채택한 것이다.

<가설 2> 납세자의 소득유형 및 구성은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친다.

2. 연구모형 및 변수설정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개인의 소득유형 및 구성이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 및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식(1)과 같다.

$$DEP = \beta_0 + \beta_1 * IC + \beta Z + YD + \varepsilon \quad (1)$$

단, <i>DEP</i>	: 종속변수(<i>RA</i> : 위험회피성향, <i>TC</i> : 납세순응도)
<i>IC</i>	: 납세자의 소득유형 및 구성의 대용변수
<i>LABOR</i>	: 가구원의 총소득 중 근로소득의 비중
<i>BUSSR</i>	: 가구원의 총소득 중 사업소득의 비중
<i>RENT</i>	: 가구원의 총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의 비중
<i>CAPTR</i>	: 가구원의 총소득 중 자본소득의 비중
<i>OTHER</i>	: 가구원의 총소득 중 기타소득의 비중
<i>BTLR</i>	: 가구원의 근로소득 대비 사업소득의 비율
<i>RTLR</i>	: 가구원의 가구원 근로소득 대비 부동산임대소득의 비율
<i>CTLR</i>	: 가구원의 가구원 근로소득 대비 자본소득의 비율
<i>OTLR</i>	: 가구원의 근로소득 대비 기타소득의 비율
<i>LNHINC</i>	: 가구 총소득의 자연로그 값
<i>LNHEXP</i>	: 가구 총지출의 자연로그 값
<i>LNTOTI</i>	: 가구원 총소득의 자연로그 값
<i>INS</i>	: 보장정보험에 가입한 경우 1인 더미변수
<i>AUDIT</i>	: 세무조사의 기피 정도(0(낮음)–1(높음)에서 0.25 단위로 측정)
<i>PUNISH</i>	: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의 인식(0(낮음)–1(높음)에서 0.25 단위로 측정)
<i>BUS</i>	: 개인사업자인 경우 1인 더미변수
<i>AGE</i>	: 연령
<i>FEMALE</i>	: 여성인 경우 1인 더미변수
<i>EDU</i>	: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인 경우 1인 더미변수
<i>LNFASET</i>	: 가구 금융자산의 자연로그값
<i>Z</i>	: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 및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들
<i>YD</i>	: 연도더미변수

가. 위험회피성향의 측정

식(1)의 종속변수인 위험회피성향(*RA*)은 재정패널조사의 10차연도부터 13차연도까지 가구원 용 설문에 포함된 “G. 가구원 의식조사-f. 위험회피”에 대한 응답결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동(同) 설문에서는 응답자에게 1억원의 자금으로 두 가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2%

수익률이 확실히 보장되는 예금 상품(투자안 A)과 5% 이익이 발생하거나 1%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각각 50%인 펀드 상품(투자안 B) 중에서 투자금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해 11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즉, “1”은 위험자산인 투자안 B에 모두 투자하는 경우로 위험회피성향이 가장 낮은 응답결과인 반면 “11”은 무위험자산인 투자안 A에 모두 투자하는 경우로 위험회피성향이 가장 낮은 응답결과를 의미한다⁵⁾. 재정패널조사의 비교적 단순한 설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이용한 이와 같은 위험회피성향의 측정방식은 전술한 바와 같이 프레이밍 효과에 따른 관측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개념상의 한계점과 더불어 편향된 응답결과로 인해 측정결과의 적절성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자산에 투자했을 경우 기대되는 수익에 대한 개별적 확률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무위험자산과 위험자산간의 확실성 등가(certainty equivalent)에 따른 기대수익률의 차이로 측정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상을 조사하여 측정하는 것이 불확실성 하의 개인의 의사결정에 근거한 위험회피성향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재정패널조사의 측정방식은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념상의 한계점으로 인해 설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편향된 응답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측정결과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측오류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본 연구에서는 보장성보험의 가입 여부를 통제변수로 반영해서 회귀모형에 적용하였다⁶⁾.

나. 납세순응도의 측정

다른 종속변수인 납세순응도(TC)는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납세 관련 태도에 대한 개인의 인식 정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 5) 본 연구에서는 변수의 표준화를 위해 신유정과 전병욱(2019)의 측정방법을 이용해서 재정패널조사의 응답결과(x)에서 1을 뺀 후 다시 10으로 나눈 값 $((x-1)/10)$ 으로 종속변수인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RA)을 측정하였다. 즉, 0부터 1사이에서 0.1의 단위로 측정하는 RA의 값이 클수록 위험회피성향이 높은 것으로 취급하였다.
- 6) 전술한 바와 같이 프레이밍 효과는 문항에 따라 사람들의 선택이나 판단이 달라지는 현상인데, 위험회피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에서 복잡한 설명이나 정보를 제시할 경우(예컨대, “경제학의 일반적 이론에 의하면 합리적 인간은 위험회피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에서도 위험회피성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와 관련해서 ... 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 선택은 무엇입니까?”)에는 설문 자체가 위험회피성향의 답변에 영향을 미치는 프레이밍 효과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 7) 신유정과 전병욱(2019)은 위험회피성향의 측정과 관련해서 재정패널조사의 설문은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 간의 선택의 상황이므로 위험에 대한 보상과 확실성 등가를 고려하여 위험회피성향을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기대수익률이 동일한 경우에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금액과 같은 효용을 얻기 위한 무위험자산의 투자금액이 얼마인지를 묻는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재정패널조사 설문의 특정한 문항에서 나타난 편향된 결과에서 응답자들의 자의적 설문 해석으로 인한 영향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재정패널조사의 10차연도의 가구원용 설문지에 포함된 “G. 가구원 의식조사—c. 납세 관련 태도—c7.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동(同) 설문에서는 응답자에게 떡볶이 집의 운영을 통한 전체 매출액 8,000만원 중에서 신용카드 등을 통한 매출액인 6,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원이 증빙서류가 없는 현금매출인 상황에서 현금매출 중 얼마만큼을 국세청에 신고하는지에 대해 11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즉, “1”은 현금소득을 전액 신고하지 않는 경우로 납세순응도가 가장 낮은 응답결과인 반면 “11”은 현금소득을 전액 신고하는 경우로 납세순응도가 가장 높은 응답결과를 의미한다⁸⁾. 해당 설문은 9차연도와 10차연도에만 진행되었는데, 납세 관련 태도가 나타내는 개인의 인식은 단기간에는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므로 분석대상 기간인 10차연도부터 13차연도까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⁹⁾.

다. 소득유형 및 구성의 측정

주된 설명변수인 납세자의 소득유형은 가구원의 총소득에서 근로소득(LABOR), 사업소득(BUSSR), 부동산임대소득(RENTR), 자본소득(CAPTR, 이자·배당 및 양도소득의 합계) 및 기타소득(OTHER)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위험회피성향은 낮아지는데, 이와 별도로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개별 소득의 비중도 위험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능동적 소득(active income)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다른 유형의 소득에 비해 상대적 비중이 크고, 소득 창출을 위해 직접적인 노동력의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더욱 민감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른 주된 설명변수인 납세자의 소득구성은 가구원의 총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사업소득(BTLR), 부동산임대소득(RTLR), 자본소득(CTLR) 및 기타소득의 상대적 비율(OTLR)로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소득의 상대적 비율은 납세자의 소득구성의 특성을 통해 위험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고, 대부분의 소득활동을 차지하는 상이한 성격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상대적 비율은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근로소득을 소득구성 측정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납세자의 가장 보편적인 소득유형이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보고하면서 여타의 소득을 보고하는 경우가 근로소

8) 본 연구에서는 변수의 표준화를 위해 신유정과 전병욱(2019)의 측정방법을 이용해서 응답결과(x)에서 1을 뺀 후에 다시 10으로 나눈 값((x-1)/10)으로 종속변수인 납세순응도(TC)를 측정하였다. 즉, 0부터 1사이에서 0.1의 단위로 측정하는 TC의 값이 클수록 납세순응도 및 세금신고의 성실성이 높은 것으로 취급하였다.

9) 신유정과 전병욱(2019)은 종속변수인 납세자의 사전적인 정서적 수준에 해당하는 세무조사 기피 정도, 현금 매출 신고 정도 및 통제변수인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에 대한 개인적 인식 및 의사결정의 특징은 단기간에 불변임을 가정하여 분석대상기간에 동일한 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종속변수인 납세순응도(TC) 및 통제변수인 세무조사 기피 정도(AUDIT)와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의 인식(PUNISH)에 대해 분석대상기간에 동일한 값을 사용하였다.

득만을 신고한 경우에 비해서는 상대적 비중이 작지만 다양한 경제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복합적인 소득구성을 나타내는 납세자의 비중도 상당한 점을¹⁰⁾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전자까지 포함해서 후자의 표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위험회피성향 및 납세순응도에 대한 소득구성의 설명력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은 납세자의 행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후자에 더해서 전자의 표본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라. 통제변수의 측정

납세순응은 조세에 대한 인식·태도, 인구통계학적 변수, 소득수준, 소득원천 및 직업 등과 함께 세무조사 위험 및 처벌 규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Fischer et al. 2012), 이러한 측면을 반영해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먼저,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의 차이는 주관적 의사결정인 위험회피성향 및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는 가구별 총소득·총지출 및 가구원 총소득의 자연로그값(각각 $LNHINC$, $LNHEXP$ 및 $LNTOTI$)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¹¹⁾.

다음으로, 납세자의 주관적 인식의 차이는 납세자의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납세자 인식을 대표하는 세무조사 기피 정도($AUDIT$)와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의 인식($PUNISH$)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세무조사 기피 정도($AUDIT$)는 과세관청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반영한 응답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주관적 인식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재정패널조사의 10차연도의 가구원용 설문지에 포함된 “G. 가구원 의식조사—c. 납세 관련 태도—c1-4.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동(同) 설문에서는 응답자에게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것에 세무조사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즉, “1”은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경우로 과세관청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가장 큰 응답결과인 반면 “5”는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작은 과세관청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가장 작은 응답결과이다¹²⁾. 해당 설문은 10차연도에만 진행되었는데, 납세 관련 태도가 나타내는 개인의 인식은 단기간에는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므로 분석대상기간인 10차연도부터 13차연도까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10)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신고 현황’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 중 근로소득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0.5%, 2019년 31.6%, 2020년 33.4%로 나타났으며 매년 그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11) 가구 단위의 경제활동과 함께 가구원의 총소득을 포함시킨 것은 경제활동의 기본 단위를 가구원인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12) 본 연구에서는 변수의 표준화를 위해 신유정과 전병욱(2019)의 측정방법을 이용해서 5에서 응답결과(x)를 뺀 후에 다시 4로 나눈 값 $((5-x)/4)$ 으로 통제변수인 $AUDIT$ 을 측정하였다. 즉, 0부터 1사이에서 0.25의 단위로 측정하는 $AUDIT$ 의 값이 클수록 과세관청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큰 것으로 취급하였다.

또한,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의 인식(*PUNISH*)은 간접적으로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재정패널조사의 10차연도의 가구원용 설문지에 포함된 “G. 가구원 의식조사—d. 조세·세무 행정 평가”에 대한 응답결과로 측정하였다¹³⁾. 해당 설문도 10차연도에만 진행되었는데, 납세 관련 태도가 나타내는 개인의 인식은 단기간에는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므로 분석대상기간인 10차연도부터 13차연도까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선행연구에서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 및 납세준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보장정보험의 가입 여부(*INS*), 개인사업자 여부(*BUS*), 연령(*AGE*), 성별(*SEX*) 및 교육 수준(*EDU*) 등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그 밖에 가구 금융자산의 자연로그값(*LNFASET*)은 투자재원인 여유자금으로 위험회피성향을 반영하는 개인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변수에 포함했고, 연도 더미변수(*YD*)는 특정연도에 발생하는 외생적 요인들을 반영하기 위해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3. 표본 선정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대상 표본을 구성하였다. 재정패널조사의 사용자 안내서에 의하면 동(同) 조사는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일반 가구를 모집단으로 해서 가구주가 대상인 가구 조사와 가구원으로 인정된 개인이 대상인 가구원 조사로 구분된다. 재정패널조사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1차연도—13차연도) 자료가 제공되는데,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2016년—2019년(10차연도—13차연도) 자료의 세부적 특성은 <표 1>과 같고, 4개연도에 걸쳐서 회귀모형의 변수들에 걸쳐있는 관측치를 제외한 최종적인 분석대상 표본은 21,327개의 가구원—연도 자료로 구성되었다.

<표 1> 분석대상 표본의 연도별 응답가구 및 가구원수

구분	10차연도	11차연도	12차연도	13차연도
조사대상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조사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발표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응답가구수	4,790	4,770	4,765	4,762
총가구원수	13,237	12,963	12,795	23,127
응답가구원수	7,865	7,965	8,010	14,759
원표본 유지율	75.2%	73.8%	72.6%	71.1%

13) 본 연구에서는 변수의 표준화를 위해 신유정과 전병욱(2019)의 측정방법을 이용해서 5에서 응답결과(*x*)를 뺀 후에 다시 4로 나눈 값($(5-x)/4$)으로 통제변수인 *PUNISH*를 측정하였다. 즉, 0부터 1사이에서 0.25의 단위로 측정하는 *PUNISH*의 값이 클수록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취급하였다.

IV. 실증분석의 결과

1. 기술통계량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2>와 같다.

<표 2>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Variable	Mean	SD	MIN	Q1	Median	Q3	MAX
<i>RA</i>	0.727	0.299	0	0.500	0.800	1	1
<i>TC</i>	0.517	0.406	0	0.100	0.500	1	1
<i>LABOR</i>	0.521	0.477	0.000	0.000	0.719	1.000	1.000
<i>BUSSR</i>	0.181	0.366	0.000	0.000	0.000	1.000	1.000
<i>RENT</i>	0.028	0.132	0.000	0.000	0.000	0.000	1.000
<i>CAPTR</i>	0.005	0.054	0.000	0.000	0.000	0.000	1.000
<i>OTHER</i>	0.008	0.066	0.000	0.000	0.000	0.000	1.000
<i>LNHINC</i>	8.241	0.891	0.000	7.700	8.377	8.882	11.919
<i>LNHEXP</i>	8.038	0.840	2.565	7.520	8.167	8.642	11.240
<i>LNTOTI</i>	7.329	1.560	0.000	6.690	7.722	8.275	11.918
<i>INS</i>	0.696	0.460	0	0	1	1	1
<i>AUDIT</i>	0.581	0.255	0	0.500	0.500	0.750	1
<i>PUNISH</i>	0.268	0.242	0	0	0.250	0.500	1
<i>BUS</i>	0.216	0.411	0	0	0	0	1
<i>AGE</i>	54.871	15.670	17	43	54	67	105
<i>FEMALE</i>	0.465	0.499	0	0	0	1	1
<i>EDU</i>	0.310	0.463	0	0	0	1	1
<i>LNFASET</i>	6.532	3.034	0.000	6.040	7.601	8.517	12.258

* *RA* : 무위험자산 및 위험자산의 투자비율($0(\text{전액 위험자산}) - 1(\text{전액 무위험자산})$ 에서 0.1 단위로 측정), *TC* : 현금매출 신고 정도($0(\text{전액 무신고}) - 1(\text{전액 신고})$ 에서 0.1 단위로 측정), *LABOR* : 가구원의 총소득 중 근로소득의 비중, *BUSSR* : 가구원의 총소득 중 사업소득의 비중, *RENT* : 가구원의 총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의 비중, *CAPTR* : 가구원의 총소득 중 자본소득의 비중, *OTHER* : 가구원의 총소득 중 기타소득의 비중, *BTLR* : 가구원의 근로소득 대비 사업소득의 비율, *RTL* : 가구원의 가구원 근로소득 대비 부동산임대소득의 비율, *CTL* : 가구원의 가구원 근로소득 대비 자본소득의 비율. *OTL* : 가구원의 근로소득 대비 기타소득의 비율, *LNHINC* : 가구 총소득의 자연로그 값, *LNHEXP* : 가구 총지출의 자연로그 값, *LNTOTI* : 가구원 총소득의 자연로그 값, *INS* : 보장정보험에 가입한 경우 1인 더미변수, *AUDIT* : 세무조사의 기피 정도($0(\text{낮음}) - 1(\text{높음})$ 에서 0.25 단위로 측정), *PUNISH* :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의 인식($0(\text{낮음}) - 1(\text{높음})$ 에서 0.25 단위로 측정), *BUS* : 개인사업자인 경우 1인 더미변수, *AGE* : 연령, *FEMALE* : 여성인 경우 1인 더미변수, *EDU* :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인 경우 1인 더미변수, *LNFASET* : 가구 금융자산의 자연로그값

위험회피성향(*RA*)의 평균 및 중위수는 각각 0.727 및 0.800으로 응답자들이 평균적으로 위험 회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순응도(*TC*)의 평균 및 중위수는 각각 0.517 및 0.500으로 응답자들이 평균적으로 중간 수준의 납세순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총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LABOR*)의 평균은 0.521로 전체 소득구성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사업소득 비중(*BUSSR*)의 평균은 0.181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밖에 부동산임대소득(*RENT*), 자본소득(이자·배당 및 양도소득)(*CAPTR*) 및 기타소득(*OTHER*) 비중의 평균은 각각 0.028, 0.005 및 0.00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장정보험 가입 여부(*INS*)의 평균은 0.696으로 전체 응답자의 70% 정도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의 주관적 인식을 반영하는 세무조사 기피 정도(*AUDIT*)의 평균은 0.581로 중간 정도의 수준을 나타냈고,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의 인식(*PUNISH*)의 평균은 0.268로 비교적 낮게 처벌수준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대상 응답자의 개인사업자 비중은 21.6%이고, 평균 연령은 54.871세이고, 여성의 비중은 46.5%이며,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은 31.0%로 나타났다.

2. 상관관계 분석

<표 3>은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표 3>의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설명변수들 간에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즉, 위험회피성향(*RA*)은 납세순응도(*TC*) 및 부동산임대소득 비중(*RENT*)과 양(+)의 유의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근로소득 비중(*LABOR*) 및 사업소득 비중(*BUSSR*)과 음(-)의 유의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자본소득(*CAPTR*) 및 기타소득 비중(*OTHER*)과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납세순응도(*TC*)는 근로소득(*LABOR*) 및 자본소득 비중(*CAPTR*)과 양(+)의 유의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사업소득 비중(*BUSSR*)과 음(-)의 유의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위험회피성향(*RA*)은 가구 총소득(*LNHINC*), 가구 총지출(*LNHEXP*) 및 가구원 총소득(*LNTOT*)과 음(-)의 유의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납세순응도(*TC*)는 이들 변수들과 음(-)의 유의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추가적으로, 위험회피성향(*RA*)은 보장정보험 가입 여부(*INS*),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의 인식(*PUNISH*), 개인사업자 여부(*BUS*), 교육수준(*EDU*) 및 가구 금융자산(*LNFASET*)과 음(-)의 유의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¹⁴⁾.

14) 일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식(1)의 회귀모형에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은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실증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회귀분석에서 해당 변수들 중 하나씩을 제거한 후 동일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후술하는 회귀분석 결과와 거의 동일하였다.

〈표 3〉 변수들의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8	9
1. <i>RA</i>	1.000								
2. <i>TC</i>	0.090***	1.000							
3. <i>LABOR</i>	-0.144***	0.055***	1.000						
4. <i>BUSSR</i>	-0.045***	-0.037***	-0.534***	1.000					
5. <i>RENT</i>	0.052***	0.007	-0.182***	-0.060***	1.000				
6. <i>CAPTR</i>	0.009	0.012*	-0.089***	-0.035***	0.021***	1.000			
7. <i>OTHER</i>	0.003	0.000	-0.074***	-0.027***	-0.007	0.007	1.000		
8. <i>LNHINC</i>	-0.185***	0.046***	0.389***	0.040***	-0.017**	-0.031***	0.072***	1.000	
9. <i>LNHEXP</i>	-0.199***	0.024***	0.357***	0.102***	0.005	-0.012**	0.044***	0.810***	1.000
10. <i>LNTOTI</i>	-0.150***	0.028***	0.416***	0.133***	0.028***	-0.023***	0.056***	0.516***	0.424***
11. <i>INS</i>	-0.183***	0.018**	0.382***	0.104***	-0.056***	-0.044***	-0.003	0.461***	0.538***
12. <i>AUDIT</i>	-0.011	0.012*	-0.002	0.035***	0.016**	-0.002	0.001	0.023***	0.023***
13. <i>PUNISH</i>	-0.125***	-0.087***	-0.024***	0.005	-0.004	0.010	-0.015**	-0.025***	-0.037***
14. <i>BUS</i>	-0.029***	-0.039***	-0.549***	0.945***	-0.012*	-0.022***	0.006	0.010	0.069***
15. <i>AGE</i>	0.246***	-0.034***	-0.589***	-0.026***	0.134***	0.064***	0.025***	-0.481***	-0.536***
16. <i>FEMALE</i>	0.102***	-0.005	-0.037***	-0.112***	0.011	-0.010	-0.017**	-0.148***	-0.170***
17. <i>EDU</i>	-0.155***	0.030***	0.264***	-0.047***	-0.027***	0.008	-0.003	0.334***	0.367***
18. <i>LNFASET</i>	-0.115***	0.002	0.086***	0.002	0.047***	0.099***	0.003	0.366***	0.325***
변수	10	11	12	13	14	15	16	17	18
10. <i>LNTOTI</i>	1.000								
11. <i>INS</i>	0.326***	1.000							
12. <i>AUDIT</i>	0.003	0.027***	1.000						
13. <i>PUNISH</i>	-0.020***	-0.016**	0.093***	1.000					
14. <i>BUS</i>	0.122***	0.074***	0.032***	0.005	1.000				
15. <i>AGE</i>	-0.347***	-0.548***	-0.031***	0.030***	0.028***	1.000			
16. <i>FEMALE</i>	-0.337***	-0.072***	-0.005	0.011	-0.125***	0.059***	1.000		
17. <i>EDU</i>	0.298***	0.217***	-0.012*	-0.019***	-0.067***	-0.373***	-0.189***	1.000	
18. <i>LNFASET</i>	0.192***	0.167***	-0.034***	0.000	0.012*	-0.106***	-0.064***	0.185***	1.000

* 변수의 정의는 <표 2>와 같음.

** “*”, “**” 및 “***”는 각각 10%, 5% 및 1%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그러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종속변수에 미치는 다른 설명변수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분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개인의 소득유형 및 구성이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 및 납세준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의 회귀분석을 통해 개별 설명변수들의 회귀계수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3. 단일변량분석

<표 4>는 전체 표본을 가구원 총소득(*LNTOTI*), 근로소득 비중(*LABOR*) 및 사업소득 비중(*BUSSRI*)의 평균을 기준으로 상하위 집단으로 구분한 후에 종속변수인 위험회피성향(*RA*)과 납세준응도(*TC*)의 차이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단일변량분석 결과

<Panel A> 가구원 총소득(<i>LNTOTI</i>)에 따른 구분				
변수	low	high	low-high	t-value
<i>RA</i>	0.794	0.687	0.107	25.80***
<i>TC</i>	0.502	0.526	-0.024	-4.10***
n	7,349	13,393		
<Panel B> 근로소득 비중(<i>LABOR</i>)에 따른 구분				
변수	low	high	low-high	t-value
<i>RA</i>	0.772	0.686	0.085	20.96***
<i>TC</i>	0.494	0.538	-0.044	-7.97***
n	10,092	11,235		
<Panel C> 사업소득 비중(<i>BUSSRI</i>)에 따른 구분				
변수	low	high	low-high	t-value
<i>RA</i>	0.732	0.707	0.024	4.86***
<i>TC</i>	0.525	0.486	0.038	5.67***
n	16,897	4,430		
<Panel D> 위험회피성향(<i>RA</i>)에 따른 구분				
변수	low	high	low-high	t-value
<i>TC</i>	0.502	0.526	-0.024	-4.10***
n	7,934	13,393		

* 변수의 정의는 <표 2>와 같음.

** 개별 기준별로 평균보다 높은 경우는 “high”이고, 낮은 경우는 “low”임.

*** “*”, “**” 및 “***”는 각각 10%, 5% 및 1%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Panel A>와 같이 가구원 총소득이 낮은 집단의 위험회피성향(RA)의 평균은 0.794인 반면 높은 집단은 0.687로 가구원 총소득이 낮은 집단의 위험회피성향이 유의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가구원 총소득이 낮은 집단의 납세순응도(TC)의 평균은 0.502인 반면 높은 집단은 0.526으로 가구원 총소득이 높은 집단의 납세순응도가 유의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Panel B>와 같이 근로소득 비중이 낮은 집단의 위험회피성향(RA)의 평균은 0.772인 반면 높은 집단은 0.686으로 근로소득 비중이 낮은 집단의 위험회피성향이 유의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근로소득 비중이 낮은 집단의 납세순응도(TC)의 평균은 0.494인 반면 높은 집단은 0.538로 근로소득 비중이 높은 집단의 납세순응도가 유의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Panel C>와 같이 사업소득 비중이 낮은 집단의 위험회피성향(RA)의 평균은 0.732인 반면 높은 집단은 0.707로 사업소득 비중이 낮은 집단의 위험회피성향이 유의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업소득 비중이 낮은 집단의 납세순응도(TC)의 평균은 0.525인 반면 높은 집단은 0.486으로 사업소득 비중이 낮은 집단의 납세순응도가 유의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Panel D>와 같이 위험회피성향이 낮은 집단의 납세순응도(TC)의 평균은 0.502인 반면 높은 집단은 0.526으로 위험회피성향이 높은 집단의 납세순응도가 유의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구원의 총소득과 총소득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비중이 낮은 응답자들의 위험회피성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서 소득의 증가에 따라 위험회피성향이 감소할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이들 응답자들의 납세순응도가 더 낮게 나타나서 소득의 증가에 따라 위험회피성향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납세순응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도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에 반해 사업소득의 비중이 낮은 응답자들의 위험회피성향과 납세순응도가 모두 더 높게 나타나서 위험회피성향을 매개로 하는 납세순응도의 일반적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였고, 위험회피성향과 납세순응도의 관계에서도 일반적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였다. 다만 <표 4>는 종속변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단일변량 분석결과이므로 회귀분석을 통해 보다 면밀한 검증 및 해석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본 연구의 가설과 관련한 상기의 차이분석에도 불구하고 단일변량분석 결과는 종속변수인 위험회피성향 및 납세순응도가 개별적 기준으로 구분할 때 서로 독립적이라는 제한적 가정에 따른 분석이며 종속변수에 미치는 여러 통제변수들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분석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유형 및 구성이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 및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의 회귀분석을 통해 회귀계수들의 결과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4. 회귀분석 결과

<표 5>에서는 납세자의 소득유형이 위험회피성향(RA)과 납세순응도(TC)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표 5>의 (1)열과 같이 종속변수인 위험회피성향(RA)에 대해 사업소득 비중($BUSSR$)은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임대소득 비중($RENT$)은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근로소득($LABOR$), 자본소득($CAPTR$) 및 기타소득 비중($OTHER$)은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소득유형이 위험회피성향 및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설명변수	종속변수			
	(1) RA		(2) TC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RA	—	—	0.1335	13.79 ***
$LABOR$	0.0035	0.39	0.0419	3.30 ***
$BUSSR$	-0.0406	-2.29 **	0.0178	0.69
$RENT$	0.0607	4.17 ***	0.0486	2.16 **
$CAPTR$	0.0251	0.72	0.1379	2.84 ***
$OTHER$	0.0035	0.12	0.0008	0.02
$LNHINC$	-0.0061	-1.57	0.0343	6.01 ***
$LNHEXP$	-0.0080	-1.86 *	-0.0229	-3.72 ***
$LNTOTI$	-0.0042	-2.23 **	-0.0027	-0.99
$AUDIT$	0.0075	1.03	0.0295	2.71 ***
$PUNISH$	0.1658	-19.04 ***	-0.1245	-11.05 ***
INS	-0.0262	-4.80 ***	-0.0008	-0.11
BUS	0.0227	1.57	-0.0184	-0.86
AGE	0.0031	15.42 ***	-0.0004	-1.27
$FEMALE$	0.0382	9.11 ***	-0.0074	-1.22
EDU	-0.0279	-5.76 ***	0.0184	2.77 **
$LNFASSET$	-0.0067	-9.71 ***	-0.0011	-1.07
$Constant$	0.7439	24.00 ***	0.3684	8.40 ***
R값	0.1107		0.022	
F값	163.26		26.15	
n	21,327		21,327	

* 변수의 정의는 <표 2>와 같음.

** “*”, “**” 및 “***”는 각각 10%, 5% 및 1%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따라서, 납세자의 소득유형과 관련해서는 가구원의 총소득 중 사업소득의 비중이 높을수록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납세순응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가구원의 총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의 비중이 높을수록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납세순응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소득유형과 관련해서 사업소득은 그 비중이 커질수록 위험회피성향을 감소시켜서 조세회피의 유인을 높이는 특성이 있고, 부동산임대소득은 반대의 영향으로 조세회피의 유인을 낮추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근로소득은 사업소득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구성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해서 다른 유형의 소득에 비해 위험회피성향 및 납세순응도에 더욱 민감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러한 예상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사업소득과 다르게 근로소득은 안정적인 소득창출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면서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재량이 거의 없으며, 정형화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협력비용도 비교적 작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소득의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밖에 부동산임대소득은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다르게 사업용 자산인 부동산의 보유와 함께 소득창출을 위한 거래사실이 비교적 투명하게 노출되며 원천징수의 배제로 인해 높은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소득의 증가에 따라 위험회피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즉, 과도한 유무형의 부담으로 인해 불성실신고의 유인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들 중에서 가구 총지출(LNHEXP), 가구원 총소득(LNTOTI),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의 인식(PUNISH), 보장성보험 가입 여부(INS), 교육수준(EDU) 및 가구 금융자산(LNFASSET)은 위험회피성향(RA)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고, 연령(AGE) 및 성별(FEMALE)은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가구 총소득(LNHINC), 세무조사 기피 정도(AUDIT) 및 개인사업자 여부(BUS)는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서 특히 가구원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위험회피성향이 낮아지는 것은 일반적인 효용함수의 특성과는 반대의 결과이기 때문에 신중한 해석의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표 5>의 (2)열과 같이 종속변수인 납세순응도(TC)에 대해 위험회피성향(RA), 근로소득(LABOR), 자본소득(CAPTR) 및 부동산임대소득 비중(RENTR)은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업소득(BUSSR) 및 기타소득 비중(OTHER)은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험회피성향의 증가에 따라 납세순응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일치하고, 일부 소득의 경우 위험회피성향을 매개로 최종적으로 납세순응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들 중에서 가구 총소득(LNHINC), 세무조사 기피 정도(AUDIT) 및 교육수준(EDU)은 납세순응도(TC)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고, 가구 총지출(LNHEXP) 및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의 인식(PUNISH)은 납세순응도(TC)에 대해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 총소득과 함께 비교적 주관적 요인들인 세무조사의 기피 정도 및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납세순응도가 커지는 반면 가구 총지출과 함께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의 인식이 높을수록 납세순응도는 작아지는 일반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표 6>은 납세자의 소득구성이 위험회피성향(RA)과 납세순응도(TC)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먼저, <표 6>의 (1)열과 같이 종속변수인 위험회피성향(RA)에 대해 근로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의 상대적 비율($BTLR$)은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임대소득(RTL) 및 자본소득의 상대적 비율(CTL)은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타소득의 상대적 비율(OTL)은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소득구성이 위험회피성향 및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설명변수	종속변수			
	(1) RA		(2) TC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RA	—	—	0.136	12.44 ***
$BTLR$	-0.005	-2.43 **	-0.005	-2.65 ***
RTL	0.014	2.04 **	-0.013	-0.69
CTL	0.205	5.75 ***	0.006	0.13
OTL	0.158	0.80	0.088	0.30
$LNHINC$	-0.008	-1.88 *	0.036	5.53 ***
$LNHEXP$	-0.003	-0.57	-0.017	-2.41 **
$LNTOTI$	-0.003	-1.91 *	0.004	1.77 *
$AUDIT$	0.007	0.86	0.035	2.91 ***
$PUNISH$	-0.174	-17.96 ***	-0.150	-12.01 ***
INS	-0.026	-4.33 ***	0.000	0.04
BUS	0.017	0.92	0.022	0.81
AGE	0.003	17.75 ***	-0.001	-2.90 ***
$FEMALE$	0.038	8.20 ***	0.004	0.61
EDU	-0.030	-5.61 ***	0.017	0.020
$LNFASET$	-0.006	-8.39 ***	-0.001	0.238
$Constant$	0.715	21.49 ***	0.308	6.43 ***
R^2	0.1161		0.0249	
F^2	145.66		25.50	
n	16,963		16,963	

* 변수의 정의는 <표 2>와 같음.

** “*”, “**” 및 “***”는 각각 10%, 5% 및 1%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따라서, 납세자의 소득구성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근로소득과 비교한 사업소득의 상대적 비율이 커질수록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납세순응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 대비 부동산임대소득 및 자본소득의 상대적 비율이 커질수록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은 높아지고, 이로 인해 납세순응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구성과 관련해서 소득의 종류별로 차등적인 세금부담의 수준과 함께 원천징수의 범위 등과 관련한 상이한 납세협력비용으로 인해 근로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의 상대적 비중이 커질수록 위험회피성향을 감소시켜서 조세회피의 유인을 높이는 특성이 있고, 부동산임대소득 및 자본소득은 반대의 영향으로 조세회피의 유인을 낮추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종속변수들에 대한 통제변수의 영향은 가구 총소득(LNHINC) 및 가구 총지출(LNHEXP)을 제외하면 <표 5>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6>의 (2)열과 같이 종속변수인 납세순응도(TC)에 대해 위험회피성향(RA) 및 근로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의 상대적 비율(BTLR)은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동산임대소득(RTLR), 자본소득(CTLR) 및 기타소득의 상대적 비율(OTLR)은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험회피성향의 증가에 따라 납세순응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일치하고, 사업소득의 경우 위험회피성향을 매개로 최종적으로 납세순응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1)열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안정적 소득원천인 근로소득에 비해 사업소득의 상대적 비율이 증가할수록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은 낮아지고, 이로 인해 납세순응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종속변수들에 대한 통제변수의 영향은 가구원 총소득(LNTOTT), 연령(AGE) 및 교육수준(EDU)을 제외하면 (1)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7>은 납세자의 소득유형 및 구성을 동시에 회귀모형에 포함시킬 경우에 이들 변수가 위험회피성향(RA)과 납세순응도(TC)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먼저, <표 7>의 (1)열과 같이 종속변수인 위험회피성향(RA)에 대해 <표 5>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사업소득 비중(BUSSR)은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임대소득(RENTR) 및 자본소득의 상대적 비율(CTLR)은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며, 통제변수들도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7>의 (2)과 같이 종속변수인 납세순응도(TC)에 대해 <표 6>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위험회피성향(RA) 및 근로소득에 대한 자본소득 비중(CAPTR)은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고, 사업소득의 상대적 비중(BTLR)은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며, 통제변수들도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소득유형 및 구성이 위험회피성향 및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설명변수	종속변수			
	(1) <i>RA</i>		(2) <i>TC</i>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i>RA</i>	—	—	0.135	12.39***
<i>LABOR</i>	−0.004	−0.46	0.017	1.22
<i>BUSSR</i>	−0.120	−1.88*	0.024	0.24
<i>RENT</i>	0.065	4.32***	0.033	1.40
<i>CAPTR</i>	0.025	0.72	0.122	2.41**
<i>OTHER</i>	0.010	0.31	−0.027	−0.55
<i>BTLR</i>	−0.003	−1.49	−0.005	−2.47**
<i>RTL</i>	0.008	1.03	−0.014	−0.74
<i>CTL</i>	0.221	5.82***	−0.004	−0.08
<i>OTL</i>	0.154	0.73	0.105	0.36
<i>LNHINC</i>	−0.007	−1.55	0.037	5.74***
<i>LNHEXP</i>	−0.005	−0.97	−0.019	−2.63**
<i>LNTOTI</i>	−0.003	−1.58	0.002	0.76
<i>AUDIT</i>	0.006	0.73	0.035	2.86***
<i>PUNISH</i>	−0.174	−17.90***	−0.150	−12.02***
<i>INS</i>	−0.025	−4.10***	−0.001	−0.14
<i>BUS</i>	0.051	1.93*	0.019	0.47
<i>AGE</i>	0.003	13.54***	−0.001	−1.86*
<i>FEMALE</i>	0.038	8.08***	0.003	0.51
<i>EDU</i>	−0.031	−5.64***	0.018	2.42**
<i>LNFASSET</i>	−0.007	−8.60***	−0.002	−1.38
<i>Constant</i>	0.732	21.73***	0.306	6.34***
R값	0.1173		0.0254	
F값	116.02		20.61	
n	16,963		16,963	

* 변수의 정의는 <표 2>와 같음.

** “*”, “**” 및 “***”는 각각 10%, 5% 및 1%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소득의 유형과 세부적 구성과 함께 다양한 설명변수들이 납세자별 특성인 위험회피성향과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첫째, 납세자의 소득유형과 관련해서는 가구원의 총소득 중 사업소득의 비중이 높을수록 위험회피성향이 낮아지지만, 부동산임대소득의 비중이 높을수록 동(同)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소득은 그 비중이 커질수록 위험회피성향을 감소시켜서 조세회피의 유인을 높이는 특성이 있고, 부동산임대소득은 반대의 영향으로 조세회피의 유인을 낮추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부동산임대소득은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다르게 사업용 자산인 부동산의 보유와 함께 소득창출을 위한 거래사실이 비교적 투명하게 노출되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납세순응도에 대해서는 위험회피성향, 근로소득, 자본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비중이 커질수록 납세순응도를 증가시켜서 위험회피성향의 증가에 따라 납세순응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소득의 경우 위험회피성향을 매개로 최종적으로 납세순응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납세자의 소득구성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근로소득과 비교한 사업소득의 상대적 비율이 커질수록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이 낮아지지만, 근로소득 대비 부동산임대소득 및 자본소득의 상대적 비율이 커질수록 동(同)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의 종류별로 차등적인 세금부담의 수준과 함께 원천징수의 범위 등과 관련한 상이한 납세협력비용으로 인해 근로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의 상대적 비중이 커질수록 위험회피성향을 감소시켜서 조세회피의 유인을 높이는 특성이 있고, 부동산임대소득 및 자본소득은 반대의 영향으로 조세회피의 유인을 낮추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소득유형 및 구성은 전체적으로 납세자의 중요한 경제적 특성인 위험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회피성향은 다시 조세회피와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납세자의 개별 소득의 절대적 비중으로 계산하는 소득유형과 함께 안정적 소득원천인 근로소득에 대한 나머지 소득들의 상대적 비율로 계산하는 소득구성의 특징이 위험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으로 조세회피와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정책 및 세무행정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득유형 및 구성의 특징에 따라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의 적정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 비해 대규모 표본이면서 측정방식이 단순한 재정패널조사의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프레이밍 효과로 인한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분석결과의 일반적 수용성을 크게 제고하였다. 이를 통해 가구원 단위의 소득유형 및 구성의 특징이 납세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 측면에서 공헌점이 있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

확인한 위험회피성향 및 납세준응도의 소득유형 및 소득구성별 차이를 반영해서 신고성실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개별 소득별 필요경비 수준 및 원천징수 방식을 차별적으로 개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위험회피성향 및 납세준응도가 다양한 개인별 태도 및 인식과 판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주관적인 요인이라는 점과 연령과 소득 등의 편향으로 인한 재정패널조사 가 구원 자료의 대표성과 더불어 해당 설문지 불충분성 등과 관련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함에는 이러한 한계점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다양한 후속연구들을 통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민조 · 전병욱. 2018. “납세자의 소득원천과 지출행태가 조세공평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조세연구 제18권 제4집 : 67-92.
- 김대환. 2019. “위험회피성향과 보험수요의 이론 및 실제”. 보험금융연구 제30권 제4호 : 63-86.
- 김대환 · 김태환. 2020. “위험회피성향에 따른 부동산 자산 선호 분석”. *Journal of Real Estate Analysis* Vol.6 No.2 : 61-81.
- 민경실 · 송인성. 2014. “국내 금융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 측정”. 소비문화연구 제17권 제1호 : 69-88.
- 박주영 · 심태섭. 2016. “중간에납상황과 세무조사가능성이 세무전문가의 판단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45권 제1호 : 177-212.
- 박주철 · 이남우. 2003. “소득원천이 세율과 납세순응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연구”. 세무학연구 제20권 제3호 : 109-132.
- 배수진. 2017. “성실납세자 혜택은 조세순응을 유도 하는가 : 조건별 보상여부와 혜택 유형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42권 제4호 : 1-35.
- 서영빈 · 송헌재. 2015. “중고령 가구의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이 가구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재정학연구 제8권 제3호 : 119-147.
- 신유정 · 전병욱. 2019.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이 납세순응 관련 주관적 인식 및 의사결정 방식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세무학연구 제36권 제4호 : 9-35.
- 이장섭 · 조인선. 2004. “수정 프로스펙트 이론과 납세신고 의사결정”. 세무학연구. 제21권 제1호 : 7-31.
- 이정미 · 심태섭. 2017. “경제적 실질 판단 요건의 도입이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73집 : 307-330.
- 차경욱 · 정다은. 2013. “개인투자자의 손실회피성향, 위험태도와 가계금융자산 보유 특성”.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6권 제3호 : 119-141.
- Allingham, M.G., and A. Sandmo. 1972. Income tax evasion :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 : 323-338.
- Arrow, K.J. 1965. The theory of risk aversion in aspects of the theory of risk bearing, by Yrjo Jahnssonin Saatio, Helsinki. Reprinted in *Essays in the Theory of Risk Bearing*, Markham Publishing Co. Chicago 1971 : 90-109.
- Beck, P.J., J.S. Davis, and W. Jung. 1991. Experimental evidence of taxpayer reporting under uncertainty. *Accounting Review* 66(3) : 535-558.
- Falsetta, D. and R.A. White. 2005. The impact of income tax withholding position and stock position on the sale of stock.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7(1) : 1-23.

- Fischer, C.M., M. Wartick and M.M. Mark. 1992. Detection probability and taxpayer compliance :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11 : 1–46.
- Holt, C.A., and S.K. Laury. 2002. Risk aversion and incentive effects. *American Economic Review* 92 : 1644–1655.
- Kahneman, D., and A. Tversky. 1979. Prospect theory :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47(2) : 263–291.
- Murnighan, K., A. Roth, and F. Schoumaker. 1988. Risk aversion in bargaining : An experimental study.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1 : 101–124.
- Neumann, J.V., and O. Morgenstern. 1944. *Theory of games and economic behavior*(Third edition).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ratt, J.W. 1964. Risk aversion in the small and in the large. *Econometrica* 32(1/2) : 122–136.
- Roberts, M.L. 1998. Tax accountants’ judgment/decision–making research : A review and synthesis.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0(1) : 78–121.
- Tversky A., and D. Kahneman. 1981. The framing of decisions and the psychology of choice. *Science* 211(4481) : 453–458.
- Vine, C.C. and M.L. Wartick. 2003. Tax–reporting implications of asymmetric treatment : Direct subsidies vs. tax deductions.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5(1) : 87–99.
- Young, S.M. 1985. Participative budgeting : The effects of risk aversion and asymmetric information on budgetary slack.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3(2) : 829–842.

The Effect of Income Type and Composition on Taxpayers' Risk Aversion and Tax Compliance

Chang Ki Choe* · Byung Wook Jun**

〈Abstract〉

Based on the finance panel data of the Korea Institution of Public Financ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income type and composition on taxpayers' economic features in risk aversion ("RA" hereafter) and tax compliance ("TC" hereafter).

First, with regard to taxpayer's income type, it is found that as proportion of business income in the total income of household members increases, RA becomes weakened while as that of real estate rental income increases, RA becomes strengthened. As for TC, it is found that as RA and the proportion of labor, capital, and real estate rental income increase, TC increase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general expectation that TC would increase as RA increases. Second, regarding the taxpayer's income composition, the higher the relative ratio of business income compared to stable labor income, the lower the taxpayer's RA. However, as the relative ratio of real estate rental income and capital income increases, RA increases.

Summing up, those results show that both income type and composition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RA, taxpayers' important economic feature, and RA also affects both TC and tax avoidance.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s of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the optimal level of tax compliance and collection costs should be decided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both tax type and composition. This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on the impact of income types and composition of household members on the economic decision-making of taxpayers. In addition to advanced research design through clear variable measurement, etc., it has differentiated contributions from previous studies through detailed empirical analysis based on reliable large-scale data provided by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Key words〉 Income type, Income composition, Risk aversion, Tax compliance, Tax avoidance

* Ph. D.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ckchoe70@gmail.com, First Author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bwjun@uos.ac.kr, Corresponding Author